

1. 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및 계약기간)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만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머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머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 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서를 2부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합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2.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제11조 (입소비용 및 이용시간,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계약서에 명기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

1.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 1)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2)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 8%를 부담한다.
 - 3)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4) 1등급 ~ 5등급 중 시설등급이 없는 경우(재가 등급만 있는 경우)에는 전액 부담한다.
 - 5) 등급 외의 자는 다음과 같은 ADL평가점수와 하세기와 평가기준에 의거 입소비용을 차등부과한다

(등급별 이용료 산정표)

등급	공단부담금 (1일)	감경률	28일	30일	31일
1등급	90,450	일반(20%)		542,700	
		감경(12%)		325,620	
		감경(10%)		271,350	
		감경(8%)		217,080	
2등급	83,910	일반(20%)		503,460	
		감경(12%)		302,070	
		감경(10%)		251,730	
		감경(8%)		201,380	
3등급	79,240	일반(20%)		475,440	
		감경(12%)		285,260	
		감경(10%)		237,720	
		감경(8%)		190,170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2024. 01. 01 개정 - 25년 동결 -

- 1) 식사재료비: (1일(3식) $2,500 \times 3 \times 30\text{일} = 225,000$, 간식비: 1일 1,000원 $\times 30 = 30,000$)
(30일 기준 총 합계 : 255,000원)

3.신원인수인의 의무 와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계약해지 및 종료

제14조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지 및 종료

(1)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 나. 전염성 질환 등을 숨기고 입소하였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마.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 바.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사.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자. 10일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외박
- 차.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입소자(통제불능, 사고위험 가능)일 경우
- 카. 과격행위, 공격행위 등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사고의 위험이 되는 경우
- 타. 말기 암환자 및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지

-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 이 정한 계약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기관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이 퇴거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종료

- (1)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 (2)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3)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3.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